#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(박영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610

발의연월일: 2021. 7.

발 의 자: 박영희 의원

찬 성 자: 신동욱 의원, 이상철 의원

김현주 의원, 오천수 의원

이민옥 의원, 양옥희 의원

황선화 의원, 민운기 의원

#### 1. 제안이유

지역사회에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생산·공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라. 공급대상(안 제5조)
- 마. 생산 및 공급과 활동계획서 등 제출(안 제6조~제7조)
- 바. 점검·조사 및 공급제한(안 제8조~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없음

나. 협조부서: 맑은환경과

다. 입법예고(2021. 8. 17. ~ 8. 22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·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유용미생물(EM: Effective Micro-organisms)"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.
  - 2. "유용미생물품"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(이하 "유용미생물 등"이라 한다)의 지속적 인 생산·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생산·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용미생물 생산·공급 지원계 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
  - 2.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·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공급대상)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
- 2.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, 단체 및 법인 (이하 "대상기관"이라 한다) 제6조(생산 및 공급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·공급 할 수 있다.
  - 1.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·홍보
  - 2.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
  - 3. 구 내 어린이집.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
  - 4. 친환경 공공사업
  -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. 제7조(활동계획서 등 제출)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 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
  - 2.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
  - 3.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·조사 협조
  -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8조(점검·조사)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

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 하게 할 수 있다.

- 제9조(공급제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.
  - 1.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  - 2.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- 3.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
  -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0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 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